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 인건비 변경 시행 안내 (2018.05.01.)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외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직급 명칭 및 기준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상기준 변경 전, 후 대비표

(단위: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직급 및 경력기준	기준인건비	직급 및 경력기준	기준인건비
연구원 1호 (학사학위 취득자)	1,800	학사급 (학사학위 취득자)	1,800
연구원 2호 (석사학위 취득자)	2,500	석사급 (석사학위 취득자)	2,500
연구원 3호 (박사학위 취득자)	4,000	박사급 (박사학위 취득자)	4,000
연구원 4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6,000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5,000
-	-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	6,000

2. 시행일자 및 대상자

가. 변경 기준 적용 시기 : 2018. 05. 01.

나. 대상자 : 2018. 05. 01. 이후 신규 근로계약 체결 건 부터 적용

(단, 참여율 조정 및 인건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포함)